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손해보험 표준약관 개정

- 금감원은 최근 실손의료보험 및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제정('09.9월)을 비롯한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개정('10.1월)에 따른 표준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손해보험의 표준약관에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함.
 - 손해보험의 표준약관 개정 수요는 그동안 축적된 법원의 관련 판결을 비롯하여 보험약관의 이해가능도 제고 방안, 개별약관 개선 사항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음.
 - 아울러 특종보험 표준약관은 타 표준약관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.

- 이에 특종보험 표준약관은 폐지하고 대표자책임 이론에 따른 면책조항 삭제 등 특종보험, 화재보험, 배상책임보험, 실손의료보험 및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사항을 개정함.
 - 질병·상해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등 다른 표준약관으로 대체 가능함에 따라 특종보험의 표준약관은 폐지함.
 - 화재보험은 기존 면책조항인 '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'이 고의로 불을 낼 경우 화재보험금을 주지 않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도록 함.
 - 배상책임보험은 방어비용(소송 및 변호사비용 등) 및 손해방지비용(긴급호송비용 등 손해방지·경감 비용)의 지급요건에서 '보험회사 사전 동의'를 삭제함.
 - 실손의료보험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상범위에 관한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보험금 지급체계를 일원화하여 분쟁을 방지함.

- 면책사항을 축소하는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, 관련 법률과 표준약관간 정합성을 제고함으로써 보험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임.
 - 또한 그동안 도입·변경된 제도를 일괄적으로 손해보험의 표준약관에도 반영함으로써 제도 시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간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임.

(손해보험 표준약관 개정,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연금실, 3/23)